

부동산개발업

■ 업무내용

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(이용권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

- 건축물 연면적 : 2천㎡(연간 5천㎡) 이상
- 건축물 연면적 : 2천㎡(연간 5천㎡) 이상
- 토지 면적 : 3천㎡(연간 1만㎡) 이상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법인	개인
3억원 이상	6억원 이상

2. 기술능력

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(법 제5조제1항에 따라야함)
<p>법률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-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-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-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- 법우사,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·개인사무소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·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·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(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) 이상 종사한 자 삭제 <2015.12.15.> 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·건축·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- 건축사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. 국가 나. 지방자치단체 다.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.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.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·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</p>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시설·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15~20일 이내 소요